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찰공무원 대상 스톱킹범죄 대응 교육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6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41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등(제221350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제안경위 등(제2213641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내용	5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등(제2213506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5. 10. 10.

다. 회 부 일: 2025. 10.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함.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최근 교제폭력·스토킹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젠더폭력 직무 관련자에게만 관련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경찰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미국·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음.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II. 제안경위 등(제2213641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5. 10. 20.

다. 회 부 일: 2025. 10.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전담조사제를 실시하여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법경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이에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제221350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제1개정안”), 제221464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2개정안”)은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전(全) 경찰관’을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개정안과 달리, 제2개정안은 모든 경찰공무원이 교육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모든 경찰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13506호 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청장은 전(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압적 통제, 비신체적 학대 및 성평등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14641호 <u>제17조의5(스토킹범죄의 대응 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톱킹범죄의 특징과 유형, 초기대응전략, 각종 사전(事前) 위험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톱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제1개정안과 제2개정안은 모두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제17조에서 검찰총장과 경찰관서의 장이 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은 이를 수정함이 없이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7조에 따른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병행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의 특수성, 관련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만, 각 개정안 제17조의2는 교육의 주체, 대상, 내용 및 주기 등에 있어 기존 제17조에 따른 교육과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7조와 비교할 때, 각 개정안 제17조의2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확대되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며, 주기적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¹⁾

1) 전체 경찰조직 차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을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허민숙, ‘친밀 관계 폭력 범죄 대응 경찰 교육 국제 비교와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 9. 15.).

＜ 현행법 및 각 개정안의 경찰공무원 교육 ＞

구 분	현행법	제1개정안	제2개정안
관련 규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2
교육주체	검찰총장, 경찰관서의 장	경찰청장	경찰관서의 장
교육대상	담당 검사·사법경찰관	전 경찰관	소속 경찰관
교육내용	스토킹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강압적 통제 및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사항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스톱킹범죄의 특징·유형, 초기대응전략 등 사항
기타 사항	-	정기적으로 실시	매년 1회 이상 실시

○ 한편, 스톱킹에 대하여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제5조에서 국가의 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²⁾ 각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스톱킹방지법 외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유사한 범죄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방지법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톱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양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속 경찰관 전부를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
